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07

발의연월일: 2021. 8. 19.

발 의 자: 박주민·김남국·김승원

민형배 • 박성준 • 윤건영

이용빈 · 정성호 · 정필모

조오섭 · 최혜영 의원

(11일)

제안이유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폐암,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런데 담배성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담배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조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 및 담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하여는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의6 신설).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제출한 담배성분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담배성분정보의 제출) ① 제조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담배성분정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조자등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하여는 제9조의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정보를 제출하여야한다.

- 1.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 2.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 3.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 유량
- 4. 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담배성분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 3개월 이내에 변경된 담배성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배성분정보의 제출 시기·기준·방법, 유해성분의 측정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9조의7(담배성분정보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제9조의6에 따라 제출한 담배성분정보(원료·첨가물 중 인체에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담배성분정보의 공개 시기, 공개 기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그 밖에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8(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 업무를 수행할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측정 ·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 4.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은 제9조의6제 1항 후단에 따른 측정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그 밖에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6부터 제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배성분정보의 제출 및 공개와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9조의6을 위반하여 담배성분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성분정보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조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의6에 따른 담배성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6(담배성분정보의 제출)
	① 제조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
	하여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담배성분정보"
	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
	하여는 제9조의8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
	(이하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2.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u>함유량</u>
	3.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
	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신 설>

- 4. 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의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담배 성분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된 담배성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 배성분정보의 제출 시기·기준 · 방법, 유해성분의 측정 기준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담배성분정보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제9조의6에 따라 제출한 담배성분정보(원료·첨가물 중인체에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성분정보 의 공개 시기, 공개 기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그 밖에 공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신 설>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8(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제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 업무를 수행할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하여야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측 정·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 4.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第29條(權限의 위임・委託) ①・ 第29條(權限의 위임・委託) ①・ ② (생략) <신 설>

第31條의2(罰則) 다음 각 호의 어 第31條의2(罰則)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은 제9 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 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그 밖에 지 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6 부터 제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배성분정보의 제출 및 공개와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 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531條当公割則)	
1 ~ / / 성해	과 간으)

<u><신 설></u>	4의2. 제9조의6을 위반하여 담
	배성분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